

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비상교육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0년 04월 28일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회사 티스쿨이앤씨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【 아 래 】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주식회사 티스쿨이앤씨를 흡수합병함 (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)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비상교육 : 주식회사 티스쿨이앤씨 = 1.0000000 : 0.0000000(무증자합병)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상호 : 주식회사 티스쿨이앤씨
 - 소재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(구로동, 대륭포스트타워7차 1409호)
4. 합병기일 : 2020년 6월 30일
5. 주식회사 비상교육과 주식회사 티스쿨이앤씨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행사절차 : 2020년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제출기간 : 2020년 5월 12일 ~ 2020년 5월 26일
 -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 : 2020년 5월 26일 까지 주식회사 비상교육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(☎02-6970-6008)
 - 2) 실질주주 : 2020년 5월 25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※ 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 - 3) 발송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, 19층(구로동, 대륭포스트타워 7차) 경영기획 Core
 -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 -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표시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함.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비상교육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비상교육과 주식회사 티스쿨이앤씨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주주명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

2020년 월 일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2020년 5월 12일
주식회사 비상교육
대표이사 양 태 회